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뉴저지 주 연령 차별 보호법

- 1 뉴저지주 차별 금지법(LAD)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나 노동조합에서 나이에 근거한 학대와 차별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예외적인 상황(고용주는 만 70세 이상 인물의 채용 또는 승진을 거부할 수 있음)이 아니라면, 나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인물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그러한 인물의 가입을 배제하거나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 2 연방의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ADEA)은 만 40세 이상의 개인만을 보호하지만, LAD는 모든 연령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젊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20대 초반인 사람을 우선하여 만 38세인 사람의 채용을 거부했다면, 채용을 거부당한 사람은 LAD에 따라 연령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AD는 또한 만 18세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자가 해당 직책을 맡기에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고용주 자격이 충분한 인물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3 고용주는 직원이 곧 정년퇴직할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그러한 인물의 승진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젊은” 직원을 선호한다고 명시된 구인 광고를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적대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령에 근거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했다면, 해당 고용주는 그러한 학대를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4 또한, 일반적으로 주거지 공급자는 세입자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인물에게 집을 세주거나 건물을 임대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 만 55세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주택과 같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 주택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5 LAD에 따라 이러한 권리나 그 외 모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인물에게 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십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

NJ DIVISION ON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03/05/21